

조선시대 상의원의 왕실복식 공급체계 연구

김 소 현

배화여자대학 전통의상과 교수

A Study on the Sang-Uiwon to Make Royal Attire in Chosun Dynasty

Soh-Hyeon Kim

Professo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Baewha Women's College

(2006. 3. 27 투고)

ABSTRACT

Sang-uiwon was the bureau of Royal attire in Chosun Dynasty. It had been established in King TAEJO, Chosun Dynasty. The 597 artisans, sorted by 68 types were assigned to Sang-uiwon. The ministry of Taxation[Hojo] and Tribute bureau[Seonhyecheong] had charged of finances of Sang-uiwon. According to the Regular rule of Sang-uiwon, there were five types for finances. The principal income tax[Won Gong] was the assignments of national finance to Sang-uiwon.

The materials for the Royal informal dress were offered by usual tributes. The kinds of usual tributes were the tribute for the Royal families' birthday, holidays such as New Year's Day, the fifth day of the fifth lunar month, the harvest festival[Chuseok], and the winter solstice, the tributes for spring and fall, every first day and fifteenth day of the month, an annual tribute, an annual present, and an annual laudatory goods which were the King's presents to His Majesty's lieges. With usual tributes from Sang-uiwon, the Royal informal dress was made by the dressmakers and embroiderers who were Court ladies. The Royal informal dress for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was trousers[Ba Ji], shirts[Sam A], jackets[Gua Du], men's gowns[Chul lick], and long vests[Due Grae]. The Royal informal dress for the Queen and the Crown Princess was loose drawers[Dan Ni Ui], long skirts[Chi Ma], shirts[Sam A] and jackets[Go Ui].

When there were the king's proceeding outside the palace, royal parties, cases of tributes to Chinese, special tributes were offer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like as making letters about the affairs, consulting, and permission. The tributes were also offered by a royal ordinance. According to the kinds of Royal event, the officers of Sang-uiwon procured the Royal costume which were conformed to the Royal etiquette.

Key words: Sang-uiwon(상의원), Regular rule of Sang-uiwon(상방정례), principal income tax(원공), tribute(진상), royal informal dress(의대)

I. 들어가는 말

선학들의 연구업적에 힘입어 복식사 분야는 많은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왔다. 주로 의복 자체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덕분에 선조들의 의생활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계층의 복식 가운데 특히 왕실복식에 대해서는 풍부한 문헌자료와 유물자료가 뒷받침이 되어 깊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왕실의 의생활 전반에 대하여 알려주는 연구 성과물은 많지 않다. 왕실인사를 포함하여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늘 새 옷을 입는 것이 과연 실제 모습이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왕실의 의생활을 알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왕실에서의 다양한 의례와 절차에 따라서 소용되는 복식이 어떻게 조달되고 공급되었는가에 대한 주제는 본인이 궁금해 하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왕실복식의 공급과 관계되는 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왕실복식의 공급 체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자급자족의 방식으로 의복을 제작하고 수요를 충당했지만 왕실에서는 조직을 통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왕실복식제작에 대한 시스템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논문이 조선왕실의 의생활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조선시대에 왕실복식을 전담한 부서는 상의원이었다. 상의원에 대한 연구 성과물로는 안애정¹⁾의 연구가 있고, 송수환이 「조선전기 왕실 재정 연구」²⁾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다. 모두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본인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주제를 다룬 김동현³⁾은 「상방정례」를 통하여 왕실복식의 수급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나 유기적인 수급관계를 끌어내지 못하여 아쉬움을 준다. 이에 상의원의 실상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상방정례」를 기본사료로 삼고,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과 「실록」, 「의례」, 「만기요람」 등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조직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왕실복식의 공급 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상의원의 조직과 체계를 살핀

후, 왕실복식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떤 체제로 복식을 제조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공급했는가를 알아보아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복식 수요에 대한 총체적인 공급체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왕실에서는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위계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를 두었으므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전이라 함은 대전, 대왕대비전, 중궁전을 일컫는 것이며, 각궁은 세자궁, 세자빈궁 이하의 위계를 뜻한다. 대전, 대왕대비전, 중궁전 등 각전에 물건을 올리는 것은 진상이라고 하고, 세자궁, 세자빈궁을 포함하여 각궁에 물건을 올리는 것을 진헌이라고 한다. 각전의 생일은 탄일, 각궁의 생일은 생신이라고 한다.

II. 상의원의 조직과 체계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태조는 고려시대에 어의(御衣)를 담당하던 장복서(掌服署)를 계승하여 상의원을 설치하였다.⁴⁾ 왕실의 의대(衣帶)와 복식(服飾) 일체를 관장하는 상의원은 경야전에 속한 공조소속의 관아로서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 물품을 제조하고 주관하였으며 옥대와 금보(金寶) 등 왕실의 귀중품을 제조하고 보관하였다. 초창기에는 고려왕실의 관포(冠袍)와 여기에 부속된 보석류가 수장되어 있었으며 공민왕의 원유관포(遠遊冠袍)와 패옥 그리고 공양왕의 초상화와 패옥도 소장되어 있었다.⁵⁾ 1895년(고종 32)에는 상의사(尙衣司)로 개칭되었고⁶⁾ 다시 상방사(尙方司)로 이름이 바뀌었다.⁷⁾

국가에서는 왕실 수요품과 군수품 등 여러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공예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장인을 관(官)과 사(司)에 예속시키고 관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상의원에는 제조(提調)[직함] 2인, 승지가 겸하는 부제조(副提調) 1인, 정3품[품계]의 정(正)[직함] 1인, 종4품의 첨정(僉正) 1인, 정5품·종5품의 별좌(別坐) 1인, 종5품의 판관(判官) 1인, 종6품의 주부(注簿) 1인, 정6품·종6품의 별제(別

提) 1인, 종7품의 직장(直長) 2인이 설치되었고, 주부(注簿) 이상 1인은 구임(久任)으로 하였다.⁸⁾ 영조대에 편찬한 「속대전」에서는 제조(提調) 2인(人), 부제조(副提調) 1인, 정(正) 1인, 첨정(僉正) 1인, 주부 1인, 직장 1인으로 구성하였으며,⁹⁾ 고종대의 「대전회통」에서는 그 이전에 있던 정 1인, 첨정 1인, 별좌(別坐) 2인, 판관 1인을 없애고, 별제(別提)는 1인으로 수를 줄이면서 궁중에서 관례(冠禮)가 있을 때만 정을 선임하도록 하였다.¹⁰⁾ 또한 잡직(雜職)에 속하던 공제(工製) 4인, 공조(工造) 1인, 공작(工作) 3인을 무보수직급인 산직(散職)으로 내렸는데¹¹⁾ 「경국대전」이전(吏典) 잡직(雜職)에 의하면 능라장(綾羅匠), 야장(冶匠), 환도장(環刀匠) 가운데 16명이 종7품의 공제를 제수 받고 옥장(玉匠), 화장(味匠)¹²⁾, 은장(銀匠) 가운데 4명이 종8품의 공조를 제수 받았으며 제색(諸色)공장의 경우 12명이 종9품의 공작을 제수 받았다. 이를 통하여 여러 직종 가운데 능라장, 야장, 환도장이 중요한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경아전(京衙前) 40명이 소속되고,¹³⁾ 차비노(差備奴) 65명, 근수노(跟隨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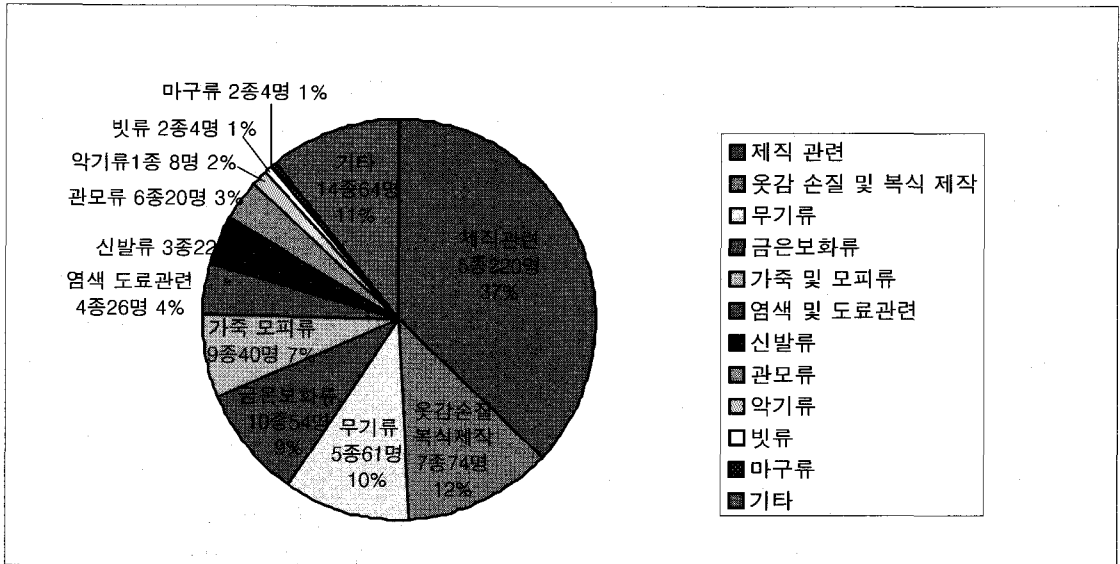
명¹⁴⁾이 배치되었으며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에 변화가 없었다. 상의원의 직제(職制)를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상의원에 소속된 장인은 세종대에 467명이었으나¹⁵⁾ 「경국대전(經國大典)」에 68종 597명으로 규정된 이후로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경국대전」권6, 공전에 기록된 상의원 소속 장인 68종 597명을 수공업 유형별로 나누어 <표 2>로 정리하였으며, 상의원 내 수공업 유형별로 장인의 분포는 <그림 1>로 도표화하였다.

장인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 1>에서 제작에 종사하는 장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실의 의생활에서 직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엿볼 수 있으며 고급직물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상의원에서는 중궁의 책례(冊禮) 및 세자의 관례(冠禮)와 책례(冊禮)에 착용하는 직의(翟衣)와 용포(龍袍) 등 법복(法服)과 가례(嘉禮)에 쓰일 금단(錦緞)의 수요에 맞추어 사색대단(四色大緞)을 제작하였고,¹⁶⁾

<표 1> 「경국대전」에 나타난 상의원의 직제(職制)

구분	품계	직함(職銜)	인원	비고		
이전 (吏典)	권 1	경관직 (京官職)	종1품	제조	2	
			종2품			
			정3품(당상관)	부제조	1	승지점임
			정3품(당하관)			
			종4품	첨정	1	
			정5품	별좌	1	별좌, 별제는 합하여 2인을 둔다.
			종5품	판관		
				별좌		
			정6품	별제		
종6품	주부	1	주부이상의 관원 중 1인은 구임으로 한다			
	별제					
이전 (吏典)	권 1	잡직 (雜職)	종7품	직장	2	
			종7품	공제	4	능라장, 야장, 환도장
			종8품	공조	1	옥장, 화장, 은장
			종9품	공작	3	제색 공장
병전 (兵典)	권 4	경아전 (京衙前)		40		
형전 (刑典)	권 5	노(奴)		차비노	65	
				근수노	7	
공전 (工典)	권 6	공장 (工匠)		597		



〈그림 1〉 상의원 내 수공업 유형별 장인의 분포

영조 때에는 사치금지로 문단(文緞), 유문화주(有紋花紬) 등을 금하였으나 적의와 명복의 직조는 허락하는 등¹⁷⁾ 고급직물을 직접 생산하였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수입품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급필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직관련 장인은 그 수에 비하여 직종은 다양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분업관계가 발달했음을 「대전속록」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능라장으로 총칭하는 공장에는 직장(織匠), 인문장(引紋匠), 위봉족(緯奉足)¹⁸⁾ 등이 있었다.¹⁹⁾ 옷감을 짜기 위하여 씨실을 직기에 걸고, 무늬를 내고, 제직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공정을 세분화하여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공장의 세분화는 능라장뿐 아니라 모든 공장에 적용되었을 것이며 관영수공업장에서 분업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장인들은 관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태만해지기 쉬우므로 생산품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능라장이 중하품을 만들었을 경우, 직장(織匠)은 25일, 인문장(引紋匠)은 20일, 위봉족(緯奉足)은 15일의 근무일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²⁰⁾ 구속하는 경우도 있었다.²¹⁾ 공장은 공역을 담당할

때 외에는 독립 수공업자로서 생산 분야를 담당할 수 있었고 상의원의 능라장은 3개의 번으로 나누어 출근일 수 600일을 채우도록 했다.²²⁾ 상의원과 군기시의 궁인(弓人), 실인(失人)은 3개의 번으로 나누어 6개월씩 서로 교대하며 1월과 7월에 두 차례 성적의 고과를 매겼던 것²³⁾으로 미루어 방직장 등 상의원의 다른 장인도 교대 시점을 6개월로 추정할 수 있다. 상의원에 소속된 장인이 없을 때는 먼 곳에서라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체류하는 비용을 지급하였으나²⁴⁾ 임공(賃工)의 형태가 등장한 후기에는 물품의 일부를 공임을 주어 제작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규격·용량·가격을 밝혀놓은 「상방정례」의 준절식(準折式)을 통하여 조선 후기의 임공 형태를 알 수 있다. 「상방정례」의 준절식에는 모락의선관(毛羅翼善冠), 마미두면(馬尾頭冕), 사두면(斜頭冕), 마미망건(馬尾網巾), 흑쾌자피화(黑麋子皮靴), 흑사피화(黑斜皮靴), 백양모정(白羊毛精), 백당피양정(白唐皮涼精), 흑웅피삼혜(黑熊皮鞞鞋), 흑웅피결화온혜(黑熊皮結花溫鞋), 흑웅피온혜(黑熊皮溫鞋), 백당피초혜(白唐皮草鞋) 등

〈표 2〉 상의원 내 수공업 유형별 장인의 수

분류	장인의 종류	분류	장인의 종류	
직물의 제직 관련 5종 220명	성장(箄匠) 10명	무기류 5종 61명	궁현장(弓弦匠) 4명	
	능라장(綾羅匠) 105명		궁인(弓人) 18명	
	방직장(紡織匠) 20명		시인(矢人) 21명	
	합사장(合絲匠) 10명		도자장(刀子匠) 6명	
	연사장(鍊絲匠) 75명		환도장(環刀匠) 12명	
염색 및 도료 관련 4종 26명	홍염장(紅染匠) 10명	금은보화류 10종 54명	채금장(裁金匠) 2명	
	청염장(靑染匠) 10명		사금장(絲金匠) 4명	
	초염장(草染匠) ²⁵⁾ 4명		은장(銀匠) 8명	
	하엽녹장(荷葉綠匠) ²⁶⁾ 2명		화장(味匠) 8명	
옷감 손질 및 복식 제작 7종 74명	침선장(針線匠) 40명		옥장(玉匠) 10명	
	도침장(搗砧匠) 14명		금박장(金箔匠) 4명	
	도련장(搗鍊匠) 2명		입사장(入絲匠) 4명	
	세담장(洗踏匠) 8명		칠장(漆匠) 8명	
	다회장(多繪匠) 4명		나전장(螺鈿匠) 2명	
	매듭장(每緝匠) 4명		조각장(彫刻匠) 4명	
	도다익장(都多益匠) 2명			
관모류 6종 20명	초립장(草笠匠) 6명		기타 14종 64명	묵장(墨匠) 4명
	사모장(紗帽匠) 4명			배첩장(裨貼匠) 4명
	망건장(網巾匠) 4명	두석장(豆錫匠) 4명		
	유립장(楮笠匠) 2명	마조장(磨造匠) 4명		
	양태장(涼太匠) 2명	유칠장(油漆匠) 2명		
	모자장(帽子匠) 2명	주장(鑄匠) 4명		
		유장(鑰匠) 4명		
가죽 및 모피류 9종 40명	숙피장(熟皮匠) 8명	동장(銅匠) 4명		
	과피장(裹皮匠) 4명	야장(冶匠) 8명		
	사피장(斜皮匠) 4명	연장(鍊匠) 10명		
	생피장(生皮匠) 2명	화빈장(火鑪匠) 2명		
	웅피장(熊皮匠) 2명	침장(針匠) 2명		
	전피장(狝皮匠) 2명	경장(鏡匠) 2명		
	전장(髹匠) 8명	옹기장(甕匠) 10명		
	모관장(毛冠匠) 2명			
	모의장(毛衣匠) ²⁷⁾ 8명	빗류 2종 4명	목소장(木梳匠) 2명	
			죽소장(竹梳匠) 2명	
신발류 3종 22명	화장(靴匠) 10명	약기류 1종 8명	풍물장(風物匠) 8명	
	삼혜장(鞞鞋匠) 8명			
	화아장(花兒匠) 4명	마구류(馬具類) 2종 4명	도목개장(都目介匠) 2명	
		도걸아장(都結兒匠) 2명		

의 물품 재료를 상세히 기록하고 모라 익선관, 사두면, 마미망건의 공임을 개당 면포 1필 즉 쌀 5말로 기록하였다.²⁸⁾

임공 방식이 도입되면서 상의원 장인의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고종 2년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이르면 상의원 소속 공장이 금은색(金銀

色) 23종, 교자색(轎子色) 19종, 의대색(衣衞色) 16종, 조직색(組織色) 7종 등 65종류가 되었다. 그 이전과 비교해보면 은혜장(韃鞋匠), 화피입염장(靴皮入染匠), 궁대장(弓袋匠), 관장(冠匠), 초장(綯匠)이 새롭게 등장하고 복식과 관련된 매듭장, 초립장이 사라졌다. 세분화, 전문화된 분야의 공장은 새롭게

설치되고, 사라진 공장은 임공이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의원은 궁궐 안에 위치하였으므로 상의원 소속 하예(下隸)가 궐문을 드나들기 위해서 신분증에 해당하는 신부(信符)나 한부(漢符)²⁹⁾를 필요로 하였다. 성종 때에는 상의원에 12개를 배정하였는데 영조 때에는 19개, 고종 때에는 24개로 늘었다. 침선비의 복장은 각 궁방(宮房)의 무수리[水賜里]·내의녀(內醫女)·각영(各營)·읍(邑)의 기녀(妓女)들처럼 밑머리를 땅아 머리에 얹고 가리마를 써서 등위(等威)를 구별하도록 했다. 내의녀는 모단(冒緞), 나머지는 흑색 삼승포(三升布)를 사용하도록 했다.³⁰⁾ 어가를 따르는 상의원은 근장(近杖)의 예에 의거하여 자주 두건(紫紬頭巾)과 좁은 소매의 자주삼(紫紬衫)과 운혜(雲鞋)를 착용하였다.³¹⁾

Ⅲ. 상의원의 재원

상의원은 선혜청과 호조, 그리고 균역·상평·진홀 3청에서 받은 물품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조선 시대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체계는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세와 호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공납, 그리고 백성의 노동력을 직접 사역하는 役의 3가지가 기본을 이루었다.

호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공납(貢納)은 공물(貢物)과 진상(進上)으로 구성되는데 공물은 중앙관청의 수요에 맞추어 부과한 것으로 의료(衣料), 식료(食料), 연료, 약재, 문구용품, 염료, 건축자재, 병기(兵器), 공업원료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재화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이에 비하여 진상은 왕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관리가 국왕에

대한 예로서 바친다는 의미를 가졌으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해당관청에서 각 궁에 조달하였다.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물품을 공인(貢人)이라는 특권 상인을 통해서 납품토록하고 그 대가로 공가(貢價)를 지급하였다.

세금의 출납을 담당할 선혜청과 호조는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정부 각 관청에 지급하였다. 대동미(大同米), 포(布), 전(錢)의 출납을 위하여 선조 41년에 창설된 선혜청은 경기, 강원, 호서, 호남, 영남, 해서 6도의 대동미를 관장했으며, 호조에서는 평안도, 황해도의 공물 및 경기전세조공물(京畿田稅條貢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예산에 없는 공물의 초과구입, 이른바 별무(別買)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였다.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현물이었으므로 지출 역시 현물로 이루어졌다.

영조는 상의원의 운영에 낭비가 없도록 1752년(영조 28), 왕실에 올리는 진상의 정례를 마련하여 「상방정례(尙方定例)」를 편찬하였으며,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원공(元貢), 신공(身貢), 복정(卜定), 호조진배(戶曹進排), 연례연무(年例燕賀), 직조(織造) 등의 방식으로 상의원에서 필요한 재원과 재료를 확보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1. 원공(元貢)

원공은 상의원에 배정된 물품으로 호조, 선혜청, 균역·상평·진홀 3청 등의 공안에 의해서 공급되었다. 공안은 각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납품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이다. 선혜청 예산 중 최대의 예산을 배정받은 관청은 왕실에 직물, 인삼 등을 진상하는 제용감³²⁾이었으며, 왕실복식을 담당하

<표 3> 선혜청의 상의원 공안[예산안] - 각 도별 공가 지급예산[각 도에 할당된 세금]

	영남	호남	호서	경기	강원
쌀	1,703석7두6승7홑2작	467석4두9승4홑	168석9승1홑5작	44석9두1승4홑	26석6두4승9홑8작
좁쌀				10석	26석6두
면포	34동3필14척	7동37필21척	14동42필		
마포					1동30필
돈	3,405냥6전	770냥	1483냥9전9푼		
분할회수	연4회	연2회	연4회	연2회	연1회

〈표 4〉 원공

품목	총량	단가 ³³⁾	총가격	공급원	
풀솜[雪綿子] ³⁴⁾	200근	5석 5두/ 근	1066석10두	선혜청	
중간치풀솜[中綿子]	300근	4석 3두/ 근	1260석	선혜청	
표백한 닷새 배[白正布]	2동	2석 5두/ 필(匹)	233석5두	선혜청	
전정포(田正布)	3동40필	1석2두5승/ 필	221석10두	선혜청	
홍화(紅花)	135근10량	1석1두/ 근	144석10두	선혜청	
지초(芝草)	183근	156근8량	5두/ 근	52석2두5승	호조
		26근8량	8두/ 근	14석12두	선혜청
매실(梅實)	774근	10두/ 근	516석	선혜청	
회나무꽃[槐花]	10근	10두/ 근	6석10두	선혜청	
황회목(黃灰木)	30동	8두/ 동	16석	선혜청	
삼보(三甫)	10동	10두/ 동	6석10두		
여회(藜灰)	7석	3석	1석/ 석	3석	호조
		4석	7두5승/ 석	2석	선혜청
쪽씨(藍種)	10두	1석/ 두	10석	선혜청	
매칠(每漆)	1두	4석 3두/ 승(升)	42석	선혜청	
전칠(全漆)	4두	3석/ 승	120석	선혜청	
정철(正鐵)	650근	1두5승/ 근	65석	호조	
부레풀[魚膠]	100근	8두/ 근	53석5두	선혜청	
평깃[雉羽]	11300개	2홉/ 개(個)	15석1두	선혜청	
화살대[箭竹]	3000개	2승/ 개	40석	선혜청	
송진[松脂]	11근10량	3두/ 근	2석4두8승7홉5작	선혜청	
저주지(楮注紙)	67권	12두/ 권(券)	53석9두	선혜청	
궁삭목(弓梁木)	168개	98개	2두/ 개	13석1두	호조
		70개	2두5승/ 개	11석10두	선혜청
강려석(强礪石)	5괴(塊)	5두/ 괴	1석10두	호조	
향사(鄉絲)	135근6량3전	70근	2석5두/ 근	163석5두	선혜청
		25근6량3전	1석10두/ 근	42석4두5승	선혜청
		40근	1석9두9승9홉/ 근	66석9두6승	호조
정근(正筋) ³⁵⁾	120근11량2전	95근11량2전	11두/ 근	70석2두7승	선혜청
		25근	1석/ 근	25석	
고좌목(高佐木)	336개	196개	1두/ 개	13석1두	호조
		140개	1두5승/ 개	14석	선혜청
씨 뻨 면화[去核棉花]	4근10량5전	11두2승/ 근	3석7두1승5홉	선혜청	
백반(白礬)	30근	8두 / 근	16석	선혜청	
여회(蠣灰)	2석	10두5승/ 석	1석6두	선혜청	
창포가루[菖蒲末]	3두	6두6승7작/ 두	1석4두8승21작	선혜청	
양털[羊毛]	142근8량5전	2석/ 근	285석9승3홉7작5리	선혜청	

는 주무부서인 상의원(尙衣院)에는 다음과 같은 예산이 배정되었다.³⁶⁾

상의원은 영남, 호남, 호서, 경기, 강원에서 거두어들이는 쌀[米], 경기와 강원에서 거두어들이는 좁쌀[田米], 그리고 쌀 대신 면포[代木]·마포[代布]·돈[代錢] 등을 배정받았다. 쌀은 1섬[石]=10말[斗]=100되[升]=1,000홉[合]=10,000작(勺)의 부피단위로 계량했으며 쌀 대신 받는 포목은 1필의

길이를 35자로 하고, 양쪽 끝을 푸른색의 실로 짜도록 하였다. 1동은 포목 50필의 묶음을 가리킨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포(正布)1필은 상포(常布)2필에 해당하고 저화 20장에 해당하며, 저화 1장은 쌀 1되에 해당했다. 저화는 녹봉을 주거나 세금을 징수할 때 일부 사용했을 뿐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의 교환수단으로 쌀과 포를 주로 사용하였다. 「태종실록」권 1에 정오승포(正五

升布)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정포(正布)란 오승포를 가리키는 말로 인정된다. 법전에서 속전금을 물리거나 교환비용을 환산할 때 닷새배³⁷⁾를 기준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³⁸⁾ 영조 때에는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원사를 아끼기 위하여 가는 실로 제작한 얇은 포목을 바치는 일이 허다했다. 자루를 만들면 알곡이 빠져나올 지경이니 승수의 규정보다 두터이 하는 것에 중점을 두라는 전교를 내리기까지 했다. 면포 1필은 쌀 5말로 환산했으며 마포도 면포와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졌다. 돈의 단위는 1냥=염전 10돈=100푼으로 환산했다. 상의원에서는 <표 3>에 제시된 선혜청 예산안에 의하여 4376石 3升 8습을 지급받아 면화, 설면자, 진사, 양모, 정포, 치우, 염료 등 30종의 물품을 확보하였다. 또한 구역·상평·진휼 3청 17공(均常賑三廳十七貢) 공안에 의해서 배22동 10필 2척, 돈 3냥을 지급받아 양모, 치우, 신흥화, 표피 등의 물품을 확보하였다.

<표 4>는 상의원에 원공으로 배정된 물품 예산서로서³⁹⁾ 상의원의 재정규모를 엿볼 수 있으며 상의원에서 제조하는 물건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양을 확인할 수 있다. 물품단가는 쌀의 가격으로 산정되었다. 품목별 총가격이 단가의 비례가로 산출되지 않은 것은 품질차이와 지역차이로 인하여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달리 매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신공(身貢)

특정인을 일정한 공역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신역의 제도로서 상의원에 배정된 각도 노비가 노역 대신 바친 세금을 일컫는다. 그 내역은 주(紬)와 면포(綿布)이다. 16세부터 공을 내고 61세가 되

면 일에서 면제시키는데 노(奴)에게는 매구(每口)에 무명[木] 2필, 비(婢)에게는 매구에 무명 1필 반으로 제정하였으나 현종과 영조가 각각 반 필씩 감해 주어서⁴⁰⁾ 노는 1필, 비는 반필을 내게 하였다. 흥년이 드는 등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감해주었다. 상의원의 납공노비는 호조, 성균관 다음으로 많은 수가 배정되었다. 조선전기에는 부역 동원되어 신역을 제공했지만 점차 신공납부자라는 경제적 부담자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월(月) 6·7두(斗) 또는 그 이상의 노임을 받고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규정된 공산품을 납부하였다. <표 5>는 「상방정례」 권천, 신공(身貢)에 기록된 바를 정리한 것이다.

3. 복정(卜定)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공물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공물 품목을 하급 관아에 내려 보내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던 것을 복정이라고 한다. 제주·통영의 총모자(驄帽子)·양태(涼臺), 북도의 모피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북도에 할당된 조피(貂皮), 서피(鼠皮), 화피(樺皮) 등은 많은 민폐를 야기했다.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호지(胡地)에서 야인으로부터 사들이거나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관리들은 가포(價布)나 다른 모물(毛物)을 징수한 후 상경해서 시전(市廛)에서 사서 납부하기도 하였다.⁴¹⁾ 「상방정례」 권천, 복정(卜定)에 기록된 바를 <표 6>으로 정리하였다.

4. 호조진배(戶曹進排)

국가의 재정을 통할하는 호조에서 고급필단(高級

<표 5> 신공

품목	담당 지역	배정 인원[구(口)]	1인당 부담량	총량	
주(紬)	평안도 노비	379	반필	3동30필	
	각전, 각궁	탄일 생신 절일 진상 및 의대 소용			
면포(綿布)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도 노비	521	노	1필 반	21동10필
			비	1필	
육승포(六升布)	함경도 노	74	1필	1동20필	
오승포(五升布)	함경도 비	42	1필	40필	

<표 6> 복정

품목	총량	담당지역	품목	총량	담당지역		
홍화	150근	60근	함경 감사	총결조(總結造)	6부(部)	2부	평안감영
		15근	경성			2부	제주
		15근	명천			2부	통영
		25근	길주	총모자(總帽子)	6부	2부	평안감영
		15근	북청			2부	제주
20근	함흥	2부	통영				
양대(涼臺)	2부	제주	죽모자(竹帽子)	8부	2부	제주	
치자(梔子)	1근	8량	제주	채화석(彩花席)	4장(張)		안동
		5량	정의				
		3량	대정	소룡문석(小龍紋席)	3장		안동
변아침석 (邊兒寢席)	35장	20장	안동	연화석(蓮花石)	10장	2장	순흥
		5장	풍기			2장	의성
		2장	의성			3장	예천
		2장	순흥			3장	용궁
		2장	영천				
		1장	예천				
		1장	용궁				
2장	영천						
북도돈피(北道獐皮)	48령(令)	15령	경성	북도서피(北道鼠皮)	56령	12령	경성
		18령	북청			22령	북청
		10령	길주			12령	길주
		5령	명천			10령	명천
매령의 가격을 5승포 11필 반으로 산정해서 납부하면 모의장이 연례 연무를 통하여 구입한다.			매령의 가격을 4승포 1필로 산정해서 납부하면 모의장이 연례 연무를 통하여 구입한다.				
북도토표피 (北道土豹皮)	2령	1령	경성	함흥돈피(咸興獐皮)	20령		함경 감사
		1령	길주				
매령의 가격을 5승포 35필로 산정해서 납부하면 모의장이 연례 연무를 통하여 구입한다.			매령의 가격을 5승포 35필로 산정해서 납부하면 모의장이 연례 연무를 통하여 구입한다.				
북도양모(北道羊毛)	35근9량			세려석(細礪石)	5괴		연일
산유자판(山柚子板)	4립(立)	대야	삼년목(三年木)	20주(株)	제주	5년에 1회	
루주(樓柱)	60주	상의원에서 면포 20필을 강원 감영으로 보내어 구입한다.	자연(紫硯)	10면(面)	안동		
후가판(厚板板)	20립		당돈피(唐獐皮)	400령	동지사편에 구입한다		
추판(楸板)	5립					각전·각궁의 의대와 여모(女帽), 임금이 나누어줄 이엄(耳掩)용으로 봉진하며 부족한 것은 호조에서 향돈피(鄕獐皮)로 바꾸어 올린다	

匹緞), 향직면자(鄕職綿子) 등의 품목을 왕실에 직접 바쳤다. 「상방정례」에 의하면 여름철 의대용으로 대홍운문사 2필, 남운문사 2필, 초록운문사 2필, 아청운문사 2필을 올리고, 각전·각궁의 탄일, 절일

의대용으로 백토주(白吐絢) 2동 6필, 백저포 48필을 올리는데 백토주는 상의원에서 각색으로 염색하여 올렸다. 백정주(白鼎絢) 2동30필 중 1동40필은 연례 염색용, 40필은 의대용으로 사용하는데 노비 신공의

로 상의원에 들어오는 주(紬)가 부족하므로 매년 호조에서 수량에 맞추어 올렸다. 각전·각궁의 의대와 고의(串衣), 임금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이염용으로 당돈피 400령, 향돈피 161령, 서피(鼠皮) 300령과 적호피(赤狐皮) 30령을 올리고, 활 120장(張)에 소요되는 흑각(黑角) 240근을 올렸다. 거혁면화 740근, 백사(白絲) 181근, 향사(鄉絲) 214근, 상의원의 재고가 부족하여 매년 홍화 100근과 지초 250근, 여러 가지 홍색염에 필요한 단목(丹木) 120근, 갓[두면(頭冕)] 3부(部)에 따르는 영자(纓子)와 망전 3부 장식에 필요한 모단(冒緞) 1척5촌, 설면자·증면자를 합한 원공 500근을 올리는 외에 필요에 따라 격식에 매이지 않고 품의하여 올렸다. 이외에 상의원에서 진상하지 않던 물품이나 상의원이 가지고 있는 물품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격식에 매이지 않고 호조에서 들여와 진상하되 품의와 결제를 거치도록 하였다.

5. 연례연무(年例燕貿)

고급필단, 범복 부속품, 장식류, 모피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못한 물품을 연례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조달했다. 사신이 북경에 갈 때 상의원의 포복을 가지고 가서 중국의 채단으로 바꾸어 오는데 상의원 사람을 보내어 구입하거나 부경(赴京)사신을 통해서 구입하였다. 궁에서 소용되는 고급직물의 수요 때문에 중국산 능단을 많이 필요로 하였다.

6. 기타

의대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견직물의 원료인 진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잠실을 주관하였다.⁴²⁾ 외잠실은 상의원의 주관 하에 별좌[정5품] 두 사람을 배치하여 여름철에는 양잠을 관리하고 양잠이 끝나면 상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누에를 키우는데 필요한 뽕나무 밭, 쪽물을 들이는데 필요한 남전(藍田) 등도 소유하였으며 직접 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지도 배정되어 있었다.⁴³⁾ 그러나 중종 때에는 잠실을 폐지하였다. 국

내에서 생산한 고치로 실을 뽑고 염색하여 만들어 낸 진사의 품질이 좋지 못하여 중국에서 진사를 수입하기도 하였고 재능 있는 장인을 중국 사행 길에 팔려 보내서 기술을 배워오게도 하였다.⁴⁴⁾ 그밖에 복식의 장식물에 필요한 주옥은 얻는 대로 봉상(封上)의 예로 확보하였다.

IV. 왕실복식 공급원으로서의 상의원의 역할

상의원에서는 각전과 각궁에서 소요되는 의대를 관례에 따라 또는 전교에 따라 제조하여 진상하였고 궁중의 일용품 및 금, 은 보화의 물품을 제조, 공급하고 보관하였으며 국왕의 뜻에 따라 공적, 사적으로 종친, 관원, 사신 등에게 지급되는 물품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명나라에서 사여 받은 관복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서 개조하거나 직접 제조하기도 하였다.

1. 제조

상의원에서 관복을 제조할 때면 명에서 보내 준 사여복이나 국조오례의 같은 문헌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는 왕이 앞장서서 모든 면에서 규범을 보이고 사치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조품의 양상이나 규격에도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조정의 문채(文彩)와 관계되는 흥배 등 사가(私家)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을 상의원에서 값을 받고 직조(織造)하기도 하고,⁴⁵⁾ 사신의 장복(章服)을 마련하는 일도 담당하였다.⁴⁶⁾

상의원 장인의 업무를 복식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사장이 실을 정련하고, 합사장이 실을 합사하는 작업을 하면 홍염장과 청염장이 염색작업을 하고, 능라장과 방직장이 제직하는 과정을 거쳤다. 성장(箴匠)은 직기의 바디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담당했으며, 금선단(金線緞)을 제직하기 위하여는 재금장(裁金匠)과 사금장(絲金匠)이 만든 금사가 사용되었다. 도련장(擣鍊匠)과

도침장(擣砧匠)은 제직된 직물을 다듬어질하여 정리하고, 침선장(針線匠)은 의복을 제작하였으며 세답장(洗踏匠)은 의복을 손질하고 다회장(多繪匠), 매듭장(每緝匠), 도다익장(都多益匠) 등은 복식부속품을 제작하였다. 상의원에서 소용되는 다리미용 솥으로 한달에 8석이 들어가니 반으로 감하라는 하교가 내린 것을 보면⁴⁷⁾ 작업량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평상복의 준비와 제작

평상시 복식은 각궁과 각전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의복제작에 소용되는 옷감과 재료를 항시 이루어지는 진상의 예로 올렸다. 생일을 맞아 올리는 탄일진상과 설[정조(正朝)], 삼짇날[중삼(重三)],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 등 절일에 올리는 진상이 항시 이루어지는 진상에 속한다. 명절은 국가 행사라기보다는 자연인 누구나 맞이하는 절기였으므로 왕실에서도 절기에 맞추어 제철 평상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상했던 것이다. 여러 절기 중 가장 중요한 4대 명절은 탄일, 설, 동지, 정월대보름인데⁴⁸⁾ 「상방정례」의 절일에는 정월대보름이 빠져 있다. 정월대보름은 설과 보름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따로 진상하는 일이 없었던 듯하다.

절기에 따라 계절에 맞는 의복재료를 올리는데 단오는 여름이 시작되는 문호이므로 백저포를 의대의 소재로 올리고, 봄의 기운이 가득한 삼짇날에는 흑웅피삼혜(黑熊皮鞞鞋), 흑웅피온혜(黑熊皮溫鞞), 백당피초혜(白唐皮草鞋) 등 신발류를 올렸으며 가을의 문턱인 추석에는 겨울옷감으로 사용되는 토주(吐紬)를 중심으로 의복재료를 올렸다. 토주는 토산(土產)의 음을 딴 것으로 낙선재 상궁들의 증언에 의하면 겉옷으로는 쓰이지 않고, 일반 내인들도 안입는 것이 관례였다고 술회하고 있다.⁴⁹⁾ 이것은 국말에 이르러 엄격했던 선대의 검약정신이 해이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방정례」가 제정된 영조대에는 사치를 금하고 문직을 멀리하여 직금방을 폐지하고 문직기를 불태우기도 했던 시기였으므로 「상방정례」나 「국혼정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늬가 없는 토주를 속옷뿐 아니라 겉옷에도 사용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절일에 올리는 옷감(衣次)은 의례복이 아닌 받침 옷 내지 평상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토주의 사용예가 더욱 빈번했던 것이라고 본다. 춘추로 2차례 올리는 춘추 양등(兩等)진상에는 봄, 가을로 침석(寢席)을 올리고 대전에는 활과 화살도 올렸다. 초하루마다 올리는 매삭(每朔) 진상에는 먹[墨]을, 보름마다 올리는 간삭(間朔) 진상에는 버선[巾巾]을 만들 백정포를 올렸다. 1년에 1차례 올리는 연례진상에는 겨울철에 필요한 모피류와 더불어 쪽씨, 솜 등을 올렸으며, 연례진배에는 의자, 침장, 껌 등을 올렸다. 또한 연례송사를 통하여 1년에 1번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줄 이엄(耳掩)류의 송사물(頒賜物)을 올렸다.

진상의 불복으로 미루어볼 때 왕과 세자의 일상복은 바지[把持], 적삼[衫兒], 저고리[褰肚], 첼릭[帖裏], 더그레[加文刺]로 구성되고, 왕대비, 중전, 세자빈의 일상복은 니의(裏衣), 치마[赤尔], 적삼[衫兒], 고의[串衣]로 구성된다. 삼아는 대전과 대왕대비전을 비롯하여 각궁과 각전에 모두 올리며, 흔히 안감으로 사용하는 흰색 정주(鼎紬)로 만든 훌웃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에 적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자의 삼아에는 장삼아(長衫兒)와 단삼아(短衫兒)가 있어서 길이가 짧은 형태와 긴 길이의 2종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자는 삼아 위에 과두(褻肚)를, 여자는 삼아 위에 고의(串衣)를 입었다. 과두와 고의는 각각 남녀의 저고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된다. 남자의 과두에는 솜을 넣은 유과두(襦褻肚)와 겹과두가 있으며 여름철 문호인 단오에는 과두를 올리지 않았다. 발기에는 과두의 표기가 아주 드물고 유물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의복의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진상의 사례로 볼 때 적삼 위에 입은 저고리로 생각된다. 과두가 소매 없는 흰색의 쾌자형이며 일종의 받침옷이라는⁵⁰⁾ 견해가 있으나 확인할만한 자료는 없다. 과두 위에는 첼릭과 더그레를 입었다.

한편 여자의 고의는 치마에 대응하는 옷으로 기록되고 있어서 저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 고의는 학자마다 관의, 천의, 고의 등으로 달리 부르는데 발기에 소고의, 당고의 등 저고리류를 나타낸 기록사

례가 많이 있어서 고의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경자는 「국혼정례」를 전후한 역대 의례를 비교해 전반기 의례에는 단저고리(短赤古里)가 있고 고의의 기록이 없으며 후기 의례에는 단저고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의가 등장하는 점과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고의가 치마에 대응하는 옷으로 기록되고 있어 고의를 단저고리로 보았다.⁵¹⁾ 단저고리는 남(藍) 또는 청금선단(靑金線段)에 대홍금선단(大紅金線段)을 사용한 화려한 형태의 장식저고리로서 임란 이후 금선단저고리가 점차 사라지고 왕실 및 일부 상류층 전용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때⁵²⁾ 고의를 단저고리로 보는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후대에 오면 저고리가 전반적으로 단소화되는 특징을 보이므로 전반기에 보이는 단저고리와 후기에 이르러 단소화된 저고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상방정례」에는 고의를 대왕대비, 왕비, 세자빈, 현빈의 의대에만 기록하고 있으며 향직과 토주를 소재로 삼고 있어서 장식적인 저고리를 나타내는 명칭이라기보다는 신분상징성을 갖는 저고리 명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왕대비전, 중궁전, 빈궁, 현빈궁에 1년에 한차례씩 연례진상을 통하여 고의제작에 필요한 향돈피(鄉獬皮)를 20령(令)씩 올린 것을 보면 겨울철 방한을 위하여 고의에 담비털을 둘러서 덧저고리로 착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자의 니의는 상의인 삼아와 짝을 이루는 홀로 된 하의류 속옷이다. 삼아처럼 흰색 정주(鼎紬)로 만들었다. 발기에는 종종 단니의와 무지기를 1작, 또는 누비봉디와 누비단니의를 1작, 봉디와 너른봉디를 1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일습을 이루는 의복의 예를 알려준다. 발기에는 니의 대신 단속 것으로도 기록하고 있는데 니의(裏衣)의 뜻을 새겨 읽으면 단속것, 음을 새겨 읽으면 니의가 되는 것이다. 여자들의 하의류 중 속곳은 밑이 막히고, 바지는 밑이 터진 차이를 보이듯이 왕실의 봉디는 밑이 터진 바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니의는 밑이 막힌 속곳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겹으로 만든 겹니의도 있다. 대전과 세자궁의 단오진상에는 바지가 없고 대신 니의가 있어서 남자복식에서 바지는

겹, 니의는 홀바지를 표기하는 용어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족건(足巾, 버선)은 보름마다 2필5척씩 올리는 백정포로 제작했다. 버선 1컬레에 소요되는 옷감 소요량은 3척5촌이므로⁵³⁾ 대략 21컬레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이다. 왕실에서는 버선을 매일 한 컬레씩 갈아 신고, 신었던 버선을 1년간 모아두었다가 종실, 외척 고관, 궁인들에게 송사하였다고 하는데⁵⁴⁾ 진상한 족건차(足巾次)로는 매일 갈아 신을 만큼의 충분한 버선을 만들기 어려워 보인다.

진상의 예에 따라 올린 옷감으로 평상복을 제작하는 일은 궁에서 사역하는 궁녀가 담당했다. 궁녀는 소속된 처소와 직무가 정해져 있었는데 의복제작은 침방(針房)과 수방(繡房)에 소속된 궁녀의 몫이었다. 침방에서는 의복을 위시하여 금침(衾枕), 누비옷 등을 제작하고, 수방에서는 복식 또는 장식물에 쓰이는 수를 놓았다. 예컨대 용금치(龍金赤)라 하여 용포(龍袍)에 다는 용보(龍補)를 위시하여 침(枕), 낭(囊), 병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에 들어가는 수를 담당했다. 침방과 수방의 궁녀는 지밀(至密) 다음가는 위계를 가져서, 세수간(洗手間), 생과방(生果房), 소주방(燒廚房), 세답방(洗踏房)의 궁녀보다 격이 높았다.⁵⁵⁾ <표 7>은 「상방정례」권천에 기록된 향시 진상의 예를 정리하여 평상복의 종류와 소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의례복의 보관과 관리

왕실 의례는 대단히 복잡하고 그에 따르는 복식의 종류도 다양하다. 상의원에서 의례복을 준비할 때 특별한 경우에는 전교(傳敎)에 따라 조제하여 올리고, 거동(舉動)을 하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어 잔치를 베풀거나 중국에 대한 예를 표할 때에는 단자(單子)⁵⁶⁾를 만들어 품의한 후 낙점이 내려오면 준비하였다. 단자를 만들어 품의하는 왕실 행사에는 왕이 선왕의 능에 다녀오는 능행, 북한산에 다녀오는 친행북한(親行北漢), 중국 황제의 칙서를 가져오는 사신을 맞으러 가는 영칙 거동(迎勅 舉動), 기로 소 축하면, 왕이 성균관에서 석존(釋尊)을 지낸 뒤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는 대사례(大射禮), 풍년

<표 7> 각전, 각궁에 향시 올리는 진상

절기	신분	복식	겉감	안감	절기	신분	복식	겉감	안감				
생일	대전 (탄일)	毛羅翼善冠	1			정초	馬尾頭冕	1					
		馬尾網巾	1				襦加文刺	1	紫的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加文刺	1	紫的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大紅綿布	1필	礮紅鼎袖	1필	
	襦帖裏	1	草綠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帖裏	1	草綠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帖裏	1	大紅綿布	1필	礮紅鼎袖		1필	襦裹肚	1	白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裹肚	1	白吐袖	1필	白鼎袖		1필	衫兒	1	白鼎袖	1필		
	衫兒	1	白鼎袖	1필				袂把持	1	白吐袖	1필	苔並白鼎袖	2필
	袂把持	1	白吐袖	1필	苔並白鼎袖		2필	黑鹿子皮靴	1			白羊毛精	
	黑鹿子皮靴	1			白羊毛精			黑熊皮靱鞋	1				
	黑熊皮靱鞋	1			白羊毛精								
	세자궁 (생신)	馬尾頭冕	1				세자궁	襦加文刺	1	大紅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馬尾網巾	1					襦帖裏	1	紫的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加文刺		1	大紅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草綠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帖裏	1	紫的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帖裏	1	草綠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帖裏	1	草綠綿布	1필	礮紅鼎袖	1필	襦裹肚	1	白鼎袖	1필				
衫兒	1	白鼎袖	1필			衫兒	1	白吐袖	1필	苔並白鼎袖	2필		
袂把持	1	白吐袖	1필	苔並白鼎袖	2필	黑鹿子皮靴	1			白羊毛精			
黑鹿子皮靴	1			白羊毛精		黑熊皮靱鞋	1						
黑熊皮靱鞋	1			白羊毛精									
대왕대비 전(탄일)	襦申衣	2	草綠吐袖	2필	礮紅鼎袖	2필	대왕 대비전	襦申衣	1	草綠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申衣	1	紫的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申衣	2	紫的吐袖	2필	礮紅鼎袖	2필
	襦赤尒	1	紫的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赤尒	1	間色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赤尒	1	間色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赤尒	1	草綠吐袖	1필	白鼎袖	1필
	袂赤尒	1	柳靑吐袖	1필	白鼎袖	1필		袂赤尒	1	紫的吐袖	1필	白鼎袖	1필
	衫兒	1	白鼎袖	1필				袂裏衣	1	白吐袖	1필	白鼎袖	1필
	袂裏衣	1	白吐袖	1필	白鼎袖	1필		黑熊皮溫鞋	1				
黑熊皮溫鞋	1			白鼎袖	1필								
중궁전 (탄일)	襦申衣	2	草綠吐袖	2필	礮紅鼎袖	2필	중궁전	襦申衣	1	草綠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申衣	1	大紅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申衣	1	大紅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赤尒	1	紫的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申衣	1	紫的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赤尒	1	間色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赤尒	1	間色吐袖	1필	白鼎袖	1필
	袂赤尒	1	柳靑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赤尒	1	草綠吐袖	1필	白鼎袖	1필
	衫兒	1	白鼎袖	1필				袂赤尒	1	紫的吐袖	1필	白鼎袖	1필
	袂裏衣	1	白吐袖	1필	白鼎袖	1필		袂裏衣	1	白吐袖	1필		
	黑熊皮							黑熊皮					
結花溫鞋	1					結花溫鞋	1						
세자빈궁 (생신)	衫兒	3	白苧布	3필	세자빈궁	襦申衣	1	草綠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赤尒	2	白苧布	2필		襦申衣	1	紫的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裏衣	2	白苧布	1필		襦赤尒	1	間色吐袖	1필	白鼎袖	1필		
	黑熊皮					襦赤尒	1	草綠吐袖	1필	白鼎袖	1필		
	結花溫鞋	1				袂裏衣	1	白吐袖	1필	白鼎袖	1필		
현빈궁 ⁵⁷⁾ (생신)	襦申衣	1	草綠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현빈궁	襦申衣	1	草綠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申衣	1	紫的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申衣	1	紫的吐袖	1필	礮紅鼎袖	1필
	襦赤尒	1	間色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赤尒	1	間色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赤尒	1	草綠吐袖	1필	白鼎袖	1필		襦赤尒	1	草綠吐袖	1필	白鼎袖	1필
	衫兒	1	白鼎袖	1필				袂裏衣	1	白吐袖	1필	白鼎袖	1필
	袂裏衣	1	白吐袖	1필	白鼎袖	1필		黑熊皮溫鞋	1				
	黑熊皮溫鞋	1											
중삼	대전	黑熊皮靱鞋	1			단오	대전	馬尾頭冕	1				
								馬尾網巾	1				
								加文刺	1	白苧布	1필		
								帖裏	2	白苧布	2필		

						裏衣 2 黑斜皮靴 1 黑熊皮靴鞋 1	白苧布 1필	白唐皮涼精	
세자궁	黑熊皮靴鞋 1					毛羅翼善冠 1 馬尾網巾 1 刺 1 帖裏 2 腋注音 1 裏衣 2 黑斜皮靴 1 黑熊皮靴鞋 1	白苧布 1필 白苧布 2필 白苧布 1필 白苧布 1필	白唐皮涼精	
대왕 대비전	黑熊皮溫鞋 1 白唐皮草鞋 1					衫兒 5 赤尔 4 裏衣 2 白唐皮草鞋 1	白苧布 5필 白苧布 4필 白苧布 1필		
중궁전	黑熊皮 結花溫鞋 1					衫兒 3 赤尔 2 裏衣 2 白唐皮草鞋 1	白苧布 3필 白苧布 2필 白苧布 1필		
세자빈궁	黑熊皮 結花溫鞋 1					衫兒 3 赤尔 2 裏衣 2 白唐皮草鞋 1	白苧布 3필 白苧布 2필 白苧布 1필		
현빈궁	黑熊皮溫鞋 1					衫兒 3 赤尔 2 裏衣 2 白唐皮草鞋 1	白苧布 3필 白苧布 2필 白苧布 1필		
추석	대전	袂帖裏 1 帖裏 1 帖裏 1 衫兒 1 袂裏肚 1 黑斜皮靴 1 黑熊皮靴鞋 1	草綠吐紬 1필 紫的吐紬 1필 白苧布 1필 白鼎紬 1필 白吐紬 1필	磻紅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白鼎紬 1필 白羊毛精		대전	襦加文刺 1 襦帖裏 1 襦帖裏 1 襦裏肚 1 衫兒 1 黑鹿子皮靴 1 黑熊皮靴鞋 1	草綠吐紬 1필 大紅吐紬 1필 紫的吐紬 1필 白吐紬 1필 白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白鼎紬 1필 白羊毛精
		대전	襦加文刺 1 襦帖裏 1 袂裏肚 1 1衫兒 1 1袂把持 1 黑鹿子皮靴 1 黑熊皮靴鞋 1	紫的吐紬 1필 草綠吐紬 1필 白苧布 1필 白鼎紬 1필 白吐紬 1필	磻紅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白鼎紬 1필 苔並白鼎紬 2필 白羊毛精		대전	襦加文刺 1 襦帖裏 1 襦帖裏 1 衫兒 1 袂把持 1 黑鹿子皮靴 1 黑熊皮靴鞋 1	大紅吐紬 1필 紫的吐紬 1필 草綠綿布 1필 白鼎紬 1필 白吐紬 1필
	대왕 대비전	袂串衣 1 袂串衣 1 袂赤尔 1 袂赤尔 1 赤尔 1 衫兒 1 黑熊皮溫鞋 1	草綠吐紬 1필 紫的吐紬 1필 草綠吐紬 1필 間色吐紬 1필 白苧布 1필 白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白鼎紬 1필 白鼎紬 1필		대왕 대비전	襦串衣 1 襦串衣 2 襦赤尔 1 襦赤尔 1 袂赤尔 1 衫兒 1 黑熊皮溫鞋 1	草綠吐紬 1필 紫的吐紬 2필 草綠吐紬 1필 紫的吐紬 1필 間色吐紬 1필 白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磻紅鼎紬 2필 白鼎紬 1필 白鼎紬 1필 白鼎紬 1필
		중궁전	袂串衣 1 袂串衣 1 袂赤尔 1 袂赤尔 1 赤尔 1 衫兒 1 黑熊皮 結花溫鞋 1	草綠吐紬 1필 紫的吐紬 1필 草綠吐紬 1필 間色吐紬 1필 白苧布 1필 白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磻紅鼎紬 1필 白鼎紬 1필 白鼎紬 1필		중궁전	襦串衣 1 襦串衣 1 襦串衣 1 襦赤尔 1 衫兒 1 黑熊皮 結花溫鞋 1	草綠吐紬 1필 大紅吐紬 1필 紫的吐紬 1필 草綠吐紬 1필 白鼎紬 1필

조선시대 상의원의 왕실복식 공급체계 연구

	세자빈궁	袂串衣	1	草綠吐袖	1필	礪紅鼎袖	1필	세자빈궁	襦串衣	1	草綠吐袖	1필	礪紅鼎袖	1필				
		袂串衣	1	紫的吐袖	1필	礪紅鼎袖	1필		襦串衣	1	紫的吐袖	1필	礪紅鼎袖	1필				
	현빈궁	袂串衣	1	草綠吐袖	1필	礪紅鼎袖	1필	현빈궁	襦串衣	1	草綠吐袖	1필	礪紅鼎袖	1필				
		袂串衣	1	紫的吐袖	1필	礪紅鼎袖	1필		襦串衣	1	紫的吐袖	1필	礪紅鼎袖	1필				
	대전	翰林風月眞墨	20丁	翰林風月眞墨	22丁(황해도감영)	大節眞墨	15丁	대전	足巾		白正布	2필5척						
		大節眞墨	7丁(평안도감영)		大節眞墨		7丁		대왕 대비전	足巾		白正布	2필5척					
매삭진상	세자궁	翰林風月眞墨	2丁	翰林風月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세자궁	足巾		白正布	2필5척						
		大節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대왕 대비전	足巾		白正布	2필5척					
	대왕 대비전	翰林風月眞墨	2丁	翰林風月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대왕 대비전	足巾		白正布	2필5척						
		大節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대왕 대비전	足巾		白正布	2필5척					
	중궁전	翰林風月眞墨	2丁	翰林風月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중궁전	足巾		白正布	2필5척						
		大節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중궁전	足巾		白正布	2필5척					
	세자빈궁	翰林風月眞墨	2丁	翰林風月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세자빈궁	足巾		白正布	2필5척						
		大節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세자빈궁	足巾		白正布	2필5척					
	현빈궁	翰林風月眞墨	2丁	翰林風月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현빈궁	足巾		白正布	2필5척						
		大節眞墨	2丁		大節眞墨		2丁		현빈궁	足巾		白正布	2필5척					
	대전	寢席: 邊兒寢席	2張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弓矢	10張	長箭	60部	片箭	30部	笛兒	30箇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대전		衣褥: 唐獐皮163令, 鄉獐皮81令, 鼠皮23令 北道土豹皮2令, 咸興獐皮20令, 翼善冠耳掩: 唐獐皮20令										
춘양진상매등	세자궁	寢席: 邊兒寢席	2張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대왕 대비전	女帽: 唐獐皮15令	串衣: 鄉獐皮40令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세자궁		翼善冠耳掩: 唐獐皮10令										
	대왕 대비전	寢席: 邊兒寢席	2張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중궁전	女帽: 唐獐皮15令	串衣: 鄉獐皮40令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중궁전		女帽: 唐獐皮15令		串衣: 鄉獐皮40令								
	세자빈궁	寢席: 邊兒寢席	2張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세자빈궁	女帽: 唐獐皮15令	串衣: 鄉獐皮40令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세자빈궁		女帽: 唐獐皮15令		串衣: 鄉獐皮40令								
	현빈궁	寢席: 邊兒寢席	2張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현빈궁	女帽: 唐獐皮15令	串衣: 鄉獐皮40令									
		縮襟: 靑 礪紅鼎袖	1필-안 白鼎袖		1필	현빈궁		女帽: 唐獐皮15令		串衣: 鄉獐皮40令								
	대전	臘藥櫃	1부, 芙蓉香櫃	1부, 白綯篩	4부, 鍼子櫃	1부, 三寅鍼子櫃	1부, 啓覆櫃	1부, 小龍紋席	3장, 涼座子	3건, 涼倚子	3건, 涼踏掌	3건, 席座子	3건, 席倚子	3건, 席踏掌	3건, 毛座子	3건, 毛倚子	3건, 毛踏掌	3건
		대왕 대비전	臘藥櫃	1부, 8幅壁衣	2浮, 7幅壁衣	3浮, 7幅氎衫	2浮, 毛座子	1건, 毛倚子	1건, 毛踏掌	1건								
연례진배	세자궁	臘藥櫃	1부, 鍼子櫃	1부, 三寅鍼子櫃	1부, 涼座子	2건, 涼倚子	2건, 涼踏掌	2건, 席座子	2건, 席倚子	2건, 席踏掌	2건, 毛座子	3건, 毛倚子	3건, 毛踏掌	3건				
		대왕 대비전	臘藥櫃	1부, 8幅壁衣	2浮, 7幅壁衣	3浮, 7幅氎衫	2浮, 毛座子	1건, 毛倚子	1건, 毛踏掌	1건								
	중궁전	臘藥櫃	1부, 8幅壁衣	5浮, 5幅氎衫	2浮, 毛座子	1건, 毛倚子	1건, 毛踏掌	1건										
		세자빈궁	臘藥櫃	1부, 7幅壁衣	5浮, 5幅氎衫	2浮, 毛座子	1건, 毛倚子	1건, 毛踏掌	1건									
	현빈궁	臘藥櫃	1부, 7幅壁衣	5浮, 5幅氎衫	2浮, 毛座子	1건, 毛倚子	1건, 毛踏掌	1건										

을 기원하며 왕이 직접 경작하는 친경(親耕), 건강을 위하여 온천에 가는 일, 영정(影幀)을 그리는 일, 최고 통수권자로서 열병을 하는 군사사열식이 있다. 군사사열식 중에서 친림열무(親臨閱武)는 일반적인 열병식, 친림모화관무재(親臨慕華館武才)는 모화관에서 행하는 것이다.

한편 왕실인사가 관여하는 행사로서 왕·왕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존숭(尊崇), 왕실 잔치인 진연(進宴)이 있고, 세자를 책봉하는 세자궁 책례, 세자궁 관례, 숙의 간택, 국혼, 세자궁가례, 숙의가례, 대군가례, 공주가례가 있다.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착용하는 복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의원에서는 규범에 따라서 복식을 준비하여 올렸다.

법복을 비롯한 의례복은 필요에 따라서 개조하거나 제작하기도 했지만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의례복의 종류별로 각각 보자기에 싸서 각(閣), 함(函), 집[家]와 같은 곳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각전에 올렸다. 대전과 세자궁의 법복은 상의원의 면복각(冕服閣), 강사포각(絳紗袍閣)에 각각 보관해 두었다. 왜주홍으로 칠한 대전 면복각에는 면복, 후수, 대대, 청조(靑組), 오색다회, 패옥, 방심곡령을 변홍 정주로 만든 4폭 홀보자기에 싸서 넣으며, 적말과 적석은 변홍 정주로 만든 3폭 홀보자기에 싸서 면복각 밑의 서랍에 넣었다. 백옥규와 청옥규는 각각 대홍광적으로 만든 집에 넣어 왜주홍칠을 한 서랍에 넣는데 청옥규는 임금의 황단(皇壇)에 나아가 직접 제사할 때 올렸다. 왜주홍으로 칠한 대전 강사포각에는 강사포, 후수, 대대, 청조, 오색다회, 패옥을 변홍 정주로 만든 4폭 홀보자기에 싸서 넣으며, 적말과 적석은 변홍 정주로 만든 3폭 홀보자기에 싸서 강사포각 밑의 서랍에 넣고 백옥규는 대홍광적으로 만든 집에 넣어두었다. 평천관, 원유관, 익선관은 각각 솜보자기에 싸서 왜주홍으로 칠한 평천관집, 원유관집에 넣어 보관했고 평천관이엄, 원유관이엄 역시 각각 각에 넣어 보관했다. 세자궁의 것은 구조는 동일하나 왜주홍 대신 흑칠을 하였다. 법복과 그 부속품은 훼손되었을 경우 새로 제조하기보다 개조에

더 치중하였다. 필요한 재료를 국내산으로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하던 것을 떼어서 다시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무역하여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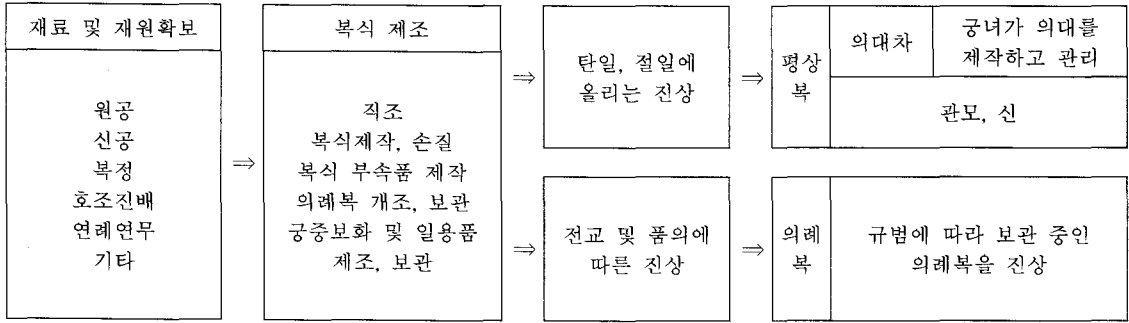
법복 이외의 예복은 주로 번주홍색 상자[常函]에 넣어 보관하였는데 용포함(龍袍函), 상시복함(常時服函), 삼가복함(三加服函), 삼가관함(三加冠函), 의함(衣函), 적의함(翟衣函) 등의 보관함이 있다. 관모류는 대개 솜보자기에 싸서 집에 넣어 두었다.⁵⁸⁾

V. 맺는 말

경아전에 속한 공조 소속의 관아인 상의원은 어의(御衣)를 담당하던 고려시대의 장복서(掌服署)를 계승하여 태조 때 설치되었으며 1895년(고종 32)에는 상의사(尙衣司)로 개칭되었고 1905년에 다시 상방사(尙方司)로 이름이 바뀌었다. 상의원에는 68종 597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 물품을 제작하고, 왕실 의례복, 옥대와 금보 등의 귀중품을 제작하고 보관하면서 관례에 따라 또는 전교에 따라 왕실물품을 준비하고 공급하였다.

필요한 재원은 선혜청과 호조, 그리고 균역·상평·진홀 3청에서 받은 물품으로 마련하였으며, 그 방식에는 원공(元貢), 신공(身貢), 복정(卜定), 호조진배(戶曹進排), 연례연무(年例燕貿), 직조(織造) 등이 있다. 원공은 국가의 재정 중 상의원에 배정된 것이며, 신공은 상의원에 배정된 각도 노비가 노역 대신 바친 공상품을 말하며, 복정은 필요에 따라 각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어들인 것이고, 호조진배는 상의원에 배정된 물품의 부족분을 국가의 재정을 통할하는 호조에서 바치는 것이다. 그 밖에 연례연무를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못한 물품을 중국에서 무역하여 조달했으며 상의원에서 직접 의대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여 확보하기도 하였다.

왕실복식 공급원으로서의 상의원에서 조선전기에는 직접 생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종이후로는 원사 생산을 위한 잠실을 폐지하는 한편 후기에는 임금의 방식이 도입되어 공임을 주고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들이기도 하였다. 왕실에서 평상시 착용하



〈그림 2〉 상의원의 왕실복식 공급체계

는 의대는 항시 이루어지는 진상의 예로 의복의 재료를 올려서 각궁과 각정에 소속된 침방과 수방의 궁녀가 제작하도록 하였다. 항시 진상의 종류는 생일에 올리는 탄일진상·생신진상, 설, 삼짚날, 단오, 추석, 동지에 올리는 절일진상, 춘추로 2차례 올리는 춘추 양등(兩等)진상, 초하루마다 올리는 매삭(每朔)진상, 보름마다 올리는 간삭(間朔)진상, 1년에 1차례 올리는 연례진상, 연례진배가 있으며 임금 이 신하에게 내려줄 이엄(耳掩)류의 송사물(頌賜物)을 1년에 1번 올리는 연례송사가 있다. 의례복은 전교(傳敎)에 따라 조제하여 올리고, 거동(擧動)을 하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어 잔치를 베풀거나 중국에 대한 예를 표할 때에는 단자(單子)를 만들어 품의한 후 낙점이 내려오면 실행하였다. 왕실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착용하는 복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의원에서는 규범에 따라서 복식을 준비하여 올렸다. 법복을 비롯한 의례복은 필요에 따라서 개조하거나 제작하기도 했지만 대개 빈번히 착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상의원에서 왕실복식을 공급한 체계를 〈그림 2〉로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 1) 안애정 (1988). 조선전기의 상의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송수환 (2000). 조선전기 왕실재정 연구. 집문당.
- 3) 김동현 (1993). 상방정례에 나타난 조선 후기 왕실복식의 수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상의원은 조선왕조의 관제 정비 과정에서 설치되었을 것이나 태조즉위교서에서 밝힌 “문무백관지체”의 내용에는 상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태조 2년(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정묘)에 처음으로 기록이 나타난다. 증보문헌비고, 권 222 직관고(職官考)에서는 상의원이 태조 원년에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다: 「태조실록」3卷, 2年 5月 23日 丁卯, 「증보문헌비고」권 222 직관고 8, 상의원.
- 5) 세종실록, 83권, 20년 10월 5일 丙辰
- 6) 고종시대사, 3집, 1895년 4월 2일
- 7) 고종시대사, 5집, 1902년 7월 13일
고종실록, 45卷, 42年 3月 4日 陽曆 4번째기사
- 8) 경국대전, 권1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 상의원
- 9) 숙대전, 권1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 상의원
- 10) 대전회통, 권1 이전 경관직(京官職)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 상의원
- 11) 대전회통, 권1 이전 잡직(雜職)
- 12) 금은을 조각하여 띠를 만드는 장인
- 13) 경국대전, 권4 병전(兵典) 경야전
- 14) 경국대전, 권5 형전(刑典) 노(奴)
- 15) 세종실록, 권84 21년 1월 신축
- 16) 효종실록, 권7 2년 8월 기유
- 17) 영조실록, 권63 22년 4월 신사, 병술
- 18) 봉족은 본래 역(役)을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뒷받침을 맡은 자로서 보통은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가까운 사이로 이루어졌다. 위봉족은 연산군때에 집경장(執經匠), 집위장(執緯匠)으로 세분화되었던 공장을 일컫는 것으로 본다.
- 19) 대전속록(大典續錄), 공전 잡령(雜令)

- 20) 대전속록, 공전 잡령
- 21) 효종실록, 권12 5년 6월 신유
- 22) 경국대전, 이전 잡직 공조
- 23) 대전회통, 권4 병전 경아전
- 24) 연산군일기, 권5 10년 7월 신묘 “승립장(繩笠匠)은 먼도(道)로부터 오는데 그 일이 경교하여 이루기 어려우므로 경중(京中)에 오래 머무르므로 스스로 보존할 수 없으니 양료(糧料)를 관급(官給)하소서”
- 25) 초립에 색을 입히는 장인
- 26) 초록색 도료를 만드는 장인
- 27) 모피로 의복의 부분품을 만드는 장인
- 28)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1
- 29) 대전회통, 권4 병전 경아전
모양은 네모난 것, 둥근 것, 굽은 것, 곧은 것(직사각형), 뾰족한 것(삼각형)이 있으며 매년 바꾸는데 앞면에는 전자(篆字)로 신부(信符)라는 글자와 그 해의 간지(干支)를 낙인(烙印)하고 뒷면에는 소속관청을 새긴다. 사모(紗帽)를 쓰고 각대(角帶)를 띤 사람은 신부(信符)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 30) 정조실록, 권26 12년 10월 신묘
- 31) 세종실록, 권57 14년 8월 계사
- 32) 명(明)에 진헌할 포물(布物)과 사여할 의복 및 사라능단(紗羅綾緞)을 관장한 곳
- 33) 무게단위는 斤을 사용하여 1근=16냥이며, 부피단위는 1말[斗]=10되[升]이다. 개(個)는 낱으로 된 물건을 셀 때 쓰는 용어이며, 솥은 한지 20장을 한 묶음으로 하여 세는 단위이고, 필(疋)은 일정한 길이로 짠 피륙을 세는 단위이며, 동(同)은 묶음을 세는 단위로 1동=50필이다.
- 34) 풀솥이란 고치에서 얻은 솥으로 1斤당 가격을 비교해 보면 雪綿子(5석5두-10냥6전6푼), 中綿子(4석3두-8냥4전), 常綿子(3석)의 순이며 이것은 곧 품질의 순위이다. 상면자의 가격은 목화의 11배 정도였다.
- 35) 궁간(弓幹) 외부에 붙이는 재료
- 36) 만기요람, 재용편 1 각공(各貢) 선혜청(宣惠廳) 57공상의원
- 37) 1새는 80가닥의 울, 다섯 새는 폭 36cm 안에 5×80울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로 새가 갈수록 그만큼 더 촘촘해 옷감은 더욱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진다.
- 38) 윤국일 (1998), 신역 경국대전, 도서출판 신서원, 178쪽.
- 39) 상방정례(尙方定例), 권천(天), 본원원공(本院元貢)
- 40) 만기요람, 재용편 4 노비공 급대, 노비 공포(貢布)로 바치는 것은 40척이 표준이다.
- 41) 중종실록, 권94, 35년 11월 경인
- 42) 궁중에 설치한 잠실인 내잠실에 비하여 연회궁에 설치한 서잠실을 칭하는 것이다: 한춘순 (1995), 조선 초기 잠상(蠶桑)정책에 대한 고찰, 경희사학19.
- 43) 송수환 (2000), 조선전기 왕실재정 연구, 집문당, pp. 159-161.
- 44) 세조실록, 권24 7년 5월 정묘
- 45) 성종실록, 권178 16년 4월 기해
- 46) 순조실록, 권13 10년 11월 임술
- 47) 증보문헌비고, 154권 國用 1
- 48) 김용숙 (1987),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p. 284.
- 49) 김용숙 (1987),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p. 339.
- 50) 김영숙 (1995),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 58.
- 51) 이경자 (1983),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pp. 132-133.
- 52) 박성실 (1996), 회장저고리와 견마기 채고, 국당 손경자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213, p. 221.
- 53) 김소현 (2005), 19세기 조선의 의생활 풍속,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돌베개, p. 109.
- 54) 김용숙 (1987),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p. 302.
- 55) 김용숙 (1987),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pp. 17-18.
- 56)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종이
- 57)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진종)의 빈, 효장세자 사후에 현빈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 58) 상방정례(尙方定例), 권천(天)